

信用狀去來下의 償還에 관한 法理 및 統一規則에 관한 研究

金鍾台* · 朴錫在**

-
- I. 序論
 - II. 信用狀去來에 있어서 償還에 관한 法理
 - III. 銀行間 信用狀 代金償還에 관한 統一規則
 - IV. 結論
-

I. 序論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開設銀行은 일반적으로 자신을 대신하여 신용장의 지급방법에 따른 支給, 引受 또는 買入을 행할 은행을 지정하고, 그 은행이 개설은행의 지정을 받은 償還銀行에게 상환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상환거래는 최근 많은 성장을 하여 1994년 미국 은행에 의하여 지급된 償還請求의 총 액수가 \$ 850 억에 이를 만큼 크게 성장한 상황이다. 다른 나라의 통계자료는 구할 수 없지만 여하튼 큰 규모를 이룬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량에 비추어 償還을 規律하는 法規는 지나치게 미진하였다. 1996년 이전까지는 신용장통일규칙(UCP 500) 제 19조 한 조항에서만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여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는 상환을 규율하는 규칙의 제정작업에 착수하여 마침내 1996년 7월 1일에 ICC 銀行間 信用狀代金償還에 관한 統一規則(URR 525)를 공표하였다.

우리 나라는 1996년 8월에 본 규칙을 채택하여 현재 이를 이용하고 있는

* 又石人學校 流通通商學部 副教授.

** 又石人學校 流通通商學部 助教授.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의 과정을 지켜 볼 때 독일, 벨기에, 핀란드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이 본 규칙을 採擇하지 않고 1999년 12월말 현재 채택국의 숫자가 40개국에 지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우리 나라는 별다른 고려없이 본 규칙을 채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본고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상환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하기 위하여 먼저 債還에 관한 法理를 考察하고 그 후 URR 525에 대하여 考察한 후 結論에서 본 規則의 注意事項 및 實務에서의 留意點을 提示하기로 한다.

II. 信用狀去來에 있어서 債還에 관한 法理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개설은행은 본인을 대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행하는 제2은행에 대한 의무인 費用償還의 급부를 하기 위하여 다른 은행인 상환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환은행을 이와 같이 개입시키는 것은 특히 외화 기초 신용장에서 유효하다. 즉, 개설은행이 債還請求權을 가지는 은행과는 計定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상환은행에게는 계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행해지는 것이다. 費用償還請求權을 가지는 제2은행¹⁾과 상환은행은 보통 주소를 동일 국내에 가진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한국의 은행이 동경의 은행에서 지급되는 신용장을 개설하더라도 상환은행은 뉴욕의 은행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實務上 이러한 예는 종종 발생한다.²⁾

상환과 관련하여 법리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신용장 급부가 어음상 행해진 경우의 어음法上의 債還請求와 提供證券에 瑕疵가 있었던 것을 이유로 하는 提供證券上の 債還請求의 경우이다. 이하에서는 위의 두 경우를 중심으로 하여 상환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開設銀行³⁾, 指定銀行, 非指定銀行으로 구분하여 논리를 전개한다.

1) 이는 보통 請求銀行이라고 불려진다.

2) 橋本喜一譯, 荷爲替信用狀の法理概論, 九州大學出版會, 1994, p.154.

3) 만일 있다면 開設銀行 외에 確認銀行이 추가된다.

1. 開設銀行의 償還請求權

(1) 어음法上의 償還請求權

개설은행은 취소불능신용장하의 급부 의무자이며 受益者가 신용장에 준거하여 발행한 어음을 ‘發行人 및/또는 善意의 所持人에 대한 償還義務免除’, 즉 어음법상의 상환청구권의 포기의 기초로 수익자에 대하여 支給信用狀의 경우에는 ‘지급을 행하고’, 引受信用狀의 경우에는 ‘그 어음을 인수함과 동시에 만기일에 지급하고’, 買入信用狀의 경우에는 ‘수익자에 의하여 발행된 어음 및/또는 신용장에 기초하여 제시된 서류에 대하여 그것을 매입할’ 의무를지고 있다. 상환청구권의 포기는 개설은행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하여 인수된 급부의무로부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즉, 개설은행이 提供證券의 매입을 행함에 있어서 어음상의 상환의무를 면제하여야 하는 것은 동행의 債務의 抽象性의 필연적인 귀결이며 이것을 부정하는 경우 신용장은 이미 본질적 특성을 상실하고 抽象的이 아닌 것으로 된다.⁴⁾

신용장에 기초하여 발행되는 어음은 어떤 것도 개설은행만을 支給人으로 하여야 한다고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설은행이 수익자와의 사이에서 이러한 어음의 상환에 관한 특약을 행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에 대한 상환대금의 지급을 거절한 경우에는 개설은행이 수익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상환청구를 행하는 취지의 사후에 있어서의 特約⁵⁾이 행해지는 것을 고려하여 그 효력을 검토하는 것으로 한다.⁶⁾

(2) 提供證券上의 償還請求權

개설은행의 지급채무의 이행은 수익자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후에 提供證券의 瑕疵(주로 條件과의 不一致)가 발견된 경우 은행은 아무런 의무없이 지급한 것으로 된다. 그

4) 橋本喜一, “信用狀における償還請求の諸問題(下)”, 手形研究 No.494, 1994. 6, p.18.

5) 예를 들면 外國換去來約定書를 들 수 있다.

6) 橋本喜一, 前掲論文, p.19.

래서 이러한 경우 신용장 급부를 한 은행은 수의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不當利得 返還請求權을 가진다고 해석된다. 즉, 개설은행의 지급은 한편으로는 대가관계상의 매수인의 채무의 이행이 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의뢰인에 대한 原因關係上의 자기의 채무의 이행으로 되지만 그것이 수의자에 대한 자신의 고유의무의 이행으로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동행은 지급을 하는 것에 의하여 자신 고유의 목적을 추구하며 결과적으로 자신의 급부를 행한다. 이것이 제공증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不當利得 返還請求權을 동행에게 취득시켜 준다.⁷⁾

개설은행은 이전에 제공증권을 수령하는 것에 의하여 그것이 신용장조건에 비추어 보아 적정하다는 승인을 준 것에 대하여 사후에 제공증권의 하자가 분명하게 된 것을 이유로 하여 이전에 행한 이러한 적극적인 결정을 언제라도 역전시키며 자신에 의하여 행해진 수령을 사후에 폐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신용장거래의 안전은 현저하게 저해된다. 즉, 신용장에 있어서 제공증권의 수령을 단순한 사실적인 행위이며 그것 자체는 언제라도 형식에 얹매이지 않고 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신용장에 있어서 제공증권 수령의 성질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즉, 제공증권의 수령은 그 제공증권의 제출이 신용장의 적정한 이행이라는 승인을 수반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의 인수라든가, 辨濟로서 제공된 급부의 수령이라고 말하기 보다는 請負契約에 있어서 주문자의 업무의 인수에 유사하고 동시에 이것을 넘는 것이다. 請負法에 의한다면 개설은행이 제공증권의 하자를 수령할 때에 알고 있었던 경우 그 하자를 상환청구 소송의 청구원인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그것 이외의 하자는 그 주장을 제한당하는 것이 없다는 결론을 야기하지만 신용장 법에 의한다면 알고 있었던 하자를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일정사항에 관해서는 그 주장이 금지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면 提供證券審査의 엄정원칙과 모순하는 결과로 될 것이다.⁸⁾

7) 橋本喜一, 前揭論文, p.20.

8) 上揭論文, p.21.

2. 指定銀行의 償還請求權

(1) 어음法上의 償還請求權

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아니라 수익자 거주지의 제2은행인 지정은행에서 이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지정은행 자신이 어음법상의 상환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계속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먼저 消極說에 따르면 지정은행은 상환의무를 면제한 신용장 개설은행의 履行補助者로서 행위하는 것 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행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견해에 대해서는 즉각 지정은행은 確認銀行 이외의 어떠한 시점에 있어서도 수익자에 대한 의무를 인수하고 있지 않는 것을 근거로 하는 반론이 추가되어 그 결과 국제상업회의소와 은행실무는 지정은행은 상환청구권을 유보하고 매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積極說을 취하고 있다. 지정은행이 매입의뢰인과의 사이에서 償還의 特約을 하는 것에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가의 여부에 돌아가 보면, 여기에서는 그 타당성을 승인하는 실무의 결론을 지지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이것에 의하면 또한 특약이 행해지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은행의 어음법상의 상환청구권이 부정되고 있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⁹⁾

(2) 提供證券上의 償還請求權

제공증권의 하자의 유무는 수령의 때에 심사되지만 그 심사가 지정은행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지정은행 자신도 또한 사후에 분명하게 된 하자를 이유로 하는 償還請求權을 가지는가 아니면 그것은 개설은행에게 한정되는 것인가? 肯定說은 지정은행은 수익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개설은행의 代理人으로서 심사를 하지만 하자있는 제공증권의 수령에 관하여까지 代理權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따라서 지정은행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개설은행에게 法的效果를 彙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정은행 자신의 償還請求權이 공정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그러나 심사에 하자가 있었던 것과 代理權을 초과한 것은

9) 橋本喜一, 前揭論文, p.22.

동일하지 않다. 위임의 이행에 하자가 있더라도 지정은행과 개설은행과의 내부 관계에 있어서 지정은행의 심사의 효과는 개설은행에 귀착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 결과 제공증권의 수령의 취소는 개설은행 자신이거나 혹은 개설은행의 이름에 있어서 지정은행에 의하여 행해져야 하는 것으로 되며 지정은행 자신의 상환청구는 부정되는 것이다.¹⁰⁾

3. 非指定銀行의 償還請求權

非指定銀行은 개설은행 혹은 확인은행과 위임관계를 포함한 어떠한 契約關係에 있는 것도 아니며, 또한 신용장통일규칙과 위임법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만일 수익자에게 어음의 매입대금을 지급하더라도 개설은행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매입대금의 상환청구는 모두 매입의뢰인과의 買入契約이 결정하는 것으로 된다. 그 때문에 비지정은행은 특히 償還請求權을 포기하는 취지를 약속하고 있지 않는 한 매입의뢰인에 대한 어음법상 혹은 제공증권상의 상환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며, 이러한 상환청구권은 '外國換去來約定書'라는 특약에 의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비지정 매입은행은 서류수령의 권한있는 은행에 대한 매입의뢰인의 書類提供事務를 대행하는 자로서 동인에 대하여 특약이 없는 한 서류심사의무를 진다. 이 서류심사의무는 신용장통일규칙에 준거한 의무는 아니지만 그것과 동일 내용의 것이라고 이야기되어야 한다. 비지정은행이 서류의 하자를 간과한 경우 매입의뢰인은 동행에 대하여 債務不履行에 의한 損害賠償請求權을 취득하지만 이것과 동행의 상환청구권과는 원칙적으로 交換給付關係에 선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¹¹⁾

요컨대 지정은행 이외의 은행은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의 위임을 받고 있지 않으므로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행하더라도 신용장에 기초하는 권리를 얻을 수 없으며 또한 UCP의 규정에 의한 보호도 받을 수 없다.¹²⁾

한편 自由買入可能信用狀에 있어서 개설은행 혹은 확인은행 이외의 모든 은

10) 橋本喜一, 前掲論文, p.22.

11) 上掲論文, p.24.

12) 東京銀行システム部 東銀リサーチインタ-ナショナル編, 貿易と信用狀, 實業之日本社, 1996, p.55.

행은 자기의 의무로서 그리고 개설은행과의 사이의 위임관계에 의해서도 매입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매입은행에게 어음법상의 상환청구권이 있는 것은 자명하며 어음법상의 상환청구권은 특히 배제되어 있지 않는 한 당연히 존재한다고 해석되고 있다. 자유매입가능신용장에 있어서도 매입을 한 은행은 提供證券에 하자가 있고 또한 그 수령을 취소한 경우는 전술한 不當利得返還請求權을 취득한다. 하자가 매입을 한 은행에 의하여 간과되고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에 의하여 처음 발견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한다.¹³⁾

III. 銀行間 信用狀 代金償還에 관한 統一規則

1. URR의 制定背景 및 經緯

(1) 制定背景

국제간의 상환 규모는 최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환에 관한 明確한 指針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종래 신용장거래에 수반하는 銀行間償還은 그 대부분이 실무관행에 위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신용장통일 규칙은 제 19 조에서 銀行間償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그 규정만으로는 복잡하고 광범한 은행간상환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즉, 이와 같은 은행간상환에 관한 관행은 UCP 500에 관한 관행 속에 흡수되어 있으며 다른 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은행의 상환에 관한 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수의자에 대한 지급을 촉진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현재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은행간상환에 관한 실무관행은 신용장에 관한 관행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양과 질을 갖추고 있다고 말하더라도 과언은 아니다.¹⁴⁾

물론 이 규칙과 유사한 관행이 수년동안 존재하여 왔다. 특히 미국은 70년대 이후 銀行間 償還指針¹⁵⁾을 가지고 있으며, 동 지침은 그것을 그들의 환거래

13) 橋本喜一, 前掲論文, p.23.

14) 黒瀬雄三, “ICC銀行間補償統一規則の意義と採擇に至る經緯”, 金融法務事情 No. 1452, 金融財政事情研究會, 1996. 6. 5, pp.6~7.

15) 즉, 미국의 NACIB(National Association of Councils on International Banking)이 1981년에 제정한 自主規則(U.S. Practices and Procedures governing Bank-

은행에 대한 은행의 제조건의 일부로 만들면서 이행되었다.

이번 ICC의 노력은 세계적인 관행을 서류로 입증하며 절차를 표준에 맞추는 좋은 기회였다. 또한 UCP 개정이 일어나고 있을 때 제 19조에 행해질 필요가 있었던 많은 가능한 변경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너무나 광범위하여서 이번 UCP 500 개정과정에서는 행해질 수 없었다. 따라서 별개의 규칙으로서 행해질 필요가 있었으며 그 결과가 본 규칙의 탄생이다.¹⁶⁾

본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UCP 500 제 19조의 細則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동 조항은 a 항부터 e 항에 이르기까지 개설은행, 상환은행, 상환청구은행간의 관계를 간결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이 URR 525는 이것을 보다 분해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전문으로 17개조에 달하는 통일규칙이다.¹⁷⁾

(2) 經 緯

1993년 3월 ICC 본부의 은행기술실무위원회는 銀行間償還에 관한 統一規則을 작성·검토하기 위한 作業部를 조성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 후 이 작업부에서 URR 525 초안의 작성작업이 진행되었으며 1995년 5월 16일 동 ICC의 은행기술실무위원회는 URR 525의 최종초안을 승인하였다. 이 최종초안이 이번 ICC의 총회에서 승인된 URR 525의 본체이다.¹⁸⁾

그런데 신 규칙의 작성은 매우 어려운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다. 기존 규칙의 개정과 달리 新規則의 작성은 세계각국에서 각종의 거래에 종사하고 있는 은행의 실무 및 절차에 대하여 깊은 識見을 갖추는 것을 필요로 한다. 세계각국에 소재하는 ICC의 국내위원회 및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송부된 규칙의 초안 전반에 미치는 코멘트에 의하여 ICC의 作業部¹⁹⁾는 銀行間償還規則을 현실로 작업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작업부의 회원은 현재의 실무관행을 자세히 조사하고 상이한 의견을 먼저 배려한 뒤 최선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

to-Bank Reimbursements under Letters of Credit)이 본 규칙의 모체가 되었다.

16) D. Taylor, "Dan Taylor on the new ICC bank-to-bank reimbursement rules", *Documentary Credits Insight*, ICC, Vol.1, No.3, Summer 1995, p.3.

17) 黑瀨雄三, 주14, p.6.

18) 黑瀨雄三, 주14, p.6.

19) 작업부의 의원들은 議長인 D. Taylor, U.S.A.를 비롯하여 Lief Anderson, Sweden; F. E. Chavannes, Netherlands; Gary Collyer, United Kingdom; Sia Chee Hong, Singapore; Salvatore Maccarone, Italy; Ole Malmqvist, Denmark; Dieter Meurer, Germany; Ferdinand Müller, Germany; Carlos Velez Rodriguez, France; L. Y. Wickremaratne, United Kingdom 등이다.

작업부에는 은행실무의 경험자가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그 지식을 이 규칙에 반영시키는 것이 가능하였다는 장점도 있다.²⁰⁾

한편 세계 각국의 신용장거래는 SWIFT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 규칙의 제정과 관련한 SWIFT의 움직임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貨換信用狀 및 推尋에 관한 SWIFT 은행 내의 표준은 국제상업회의소의 UCP, URR 및 URC 규칙을 지지한다. 적용 가능한 경우 화환신용장 뿐만 아니라 그 상환은 만일 메시지에서 별도의 명시가 없다면 SWIFT를 통하여 개설된 때에 UCP 및 URR에 지배된다. URR 525의 관행에 의하여 요구된 표준 개정판은 1994년 12월 SWIFT 이사회에 의하여 승인되었다. 1995년 동안 SWIFT는 다양한 제안된 변경에 관한 산업 피드백을 간청하였다. 이러한 피드백은 만장일치는 아니었으며 정밀한 조사를 요구한 몇 개의 추가적 항목으로 끝났다. 결과로서 1996년 3월에 SWIFT 위원회는 모든 미해결의 항목을 재검토 및 해결하고 1997년에 그것들을 수행하기 위한 은행간 상환에 대한 표준 작업부를 창설하기로 합의하였다. 동 작업부는 1996년 동안 회원들로부터 추가적 코멘트를 요청하였고 표준 변경을 마무리지었다.²¹⁾

2. 主要內容

(1) URR의 適用

URR 525에 관해서도 UCP 500과 마찬가지로 그 適用에 관한 問題가 발생한다. URR 525의 제1조에서 기술되고 있는 바와 같이 URR 525의 準據文言이 償還授權書에 일부로서 추가되고 있는 경우에는 상환수권서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행해지고 있지 않는 한 URR 525가 당해 은행간 상환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UCP 500의 준거문언을 신용장에 추가하고 있는 모든 은행은 통상 이 URR 525를 받아들이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제1조에 의하면 개설은행은 자신이 개설하는 신용장에서 은행간 상환은 이 URR 525에 따르도록 지시하여야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준거문언은

20) 黑瀬雄三, 주) 14, p.7.

21) P. V. Miserez, "Paul V. Miserez reports on how S.W.I.F.T. is implementing the ICC's Bank-to-Bank Reimbursement Rules", *Documentary Credits Insight*, ICC, Vol.3, No.1, Winter 1997, p.13.

또한 상환수권서에 대하여 행해져야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URR 525의 준거문언은 상환수권서에 기재되고 있더라도 신용장 자체에는 기재하고 있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상환은행은 이 URR 525에拘束되는 것으로 되지만 그것은 상환수권서에 이 규칙이 일부로서 추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환청구은행은 은행간상환이 URR 525에 따라서 행해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신용장에는 URR 525의準據文言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URR 525의 제1조에는 URR 525가 UCP 500의 규정에優先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혼란을 피하기 위한 규정이 있다. URR 525는 어디까지나 UCP 500을 보완하는 것이다. ICC 본부는 URR 525는 UCP 500의 어떠한 조항도 변경하지 않고 이것과 모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만일 양자간에競合이 생긴 경우에는 UCP 500이 URR 525에 우선하는 것으로 된다.²²⁾

(2) 償還確約

상환수권이 취소불능인 유일한 때는 개설은행이 상환은행에게 자행의 취소불능 지급확약을 발행하도록 지시하는 때이다. 상환은행의 이러한 취소불능 확약은償還確約이라고 불려진다. 이 경우에 있어서 개설은행은 상환은행에게 자행의取消不能 償還授權을 발행하며 상환은행은 차례로 지정된 청구은행에게 자행의 취소불능 상환확약을 발행한다. 동 확약은 청구은행에게 상환확약의 조건에 따른다는 전제 하에 청구가 상환은행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다는 보장을 제공하여 준다. 많은 사람들은償還確約을信用狀의確認에비교하며 사실상償還確約은종종確認된償還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렇지만 상환은행은 개설은행의 의무에 자행의 의무를 추가하기보다는 오히려 자행 자신의 독립적인 확약을 발행하며 그 상환확약은 신용장의 제조건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생각이다.²³⁾

상환확약은 URR 525에 따라서 새로이 창출된 개념이다. 본조 a 항은 상환은행이 정규의 상환확약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본규칙 제6조의 규정 및 본조의

22) 黒瀬雄三, “銀行間補償に關する統一規則の意義と採擇に至る經緯”, 銀行法務21 No. 523, 1996. 8, p.22.

23) D. Taylor, “Dan Taylor on precautions to be taken with the reimbursement undertaking”, *Documentary Credits Insight*, ICC, Vol.3, No.3, Summer 1997, p.14.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조 b 항은 상환은행이 상환화약을 발행하는 경우에 상환수권서에 기재하는 것을 요구받은 특정의 정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상환화약이 발행되는 경우에는 개설은행의 상환수권서는 취소불능의 것이 아니면 안되며 그것에 수반하는 수권 내지 요구도 취소불능의 것으로 된다. 이 말은 상환은행이 상환화약의 지급을 행하는 경우에 개설은행으로부터 상환은행에 대하여 행하는 상환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본조 b 항 v 호는 상환수권서에는 청구제시를 위한 최종일 및 지급유예기간의 기재가 없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정보는 상환화약을 위한 최대한의 의무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본조 c 항은 상환은행이 상환화약의 기초에 있어서 환어음의 인수 및 지급을 요구받고 있는 경우에 필요한 정보를 열거하여 기록하고 있다. 이것에 더하여 본항은 개설은행이 상환은행에 대하여 상환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일람출급 어음을 요구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에 따라서 상환은행이 일람출급 어음상의 채무를 지는 것 없이 정당하게 실행된 청구에 대하여 상환은행으로부터의 상환이 실행되는 것으로 된다. 본조 d항은 상환은행이 상환화약을 발행할 준비가 없는 경우에는 자체없이 그 취지를 개설은행에게 연락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조 e항은 償還確約의 조건은 상환화약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안되며 그 경우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상환화약의 조건 속에서 중요한 것으로는 支給猶豫期間을 포함하는 請求提示를 위한 最終日 및 償還確約金額의 最高限度 등이다.²⁴⁾

(3) 償還授權書의 條件變更 또는 取消

제 2조 및 제 9조에 따라서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상환은행이 상환화약을 발행하고 있지 않는 한 상환은행은 어떠한 청구에 대해서도 이것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은 명확하다. 개설은행은 언제라도 자행의 償還授權書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환수권서는 취소불능의 것은 아니다. 취소와 병행하여 개설은행은 상환은행의 통지의 기초로 상환수권서를 변경하는 것에 의하여 상환조건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상환수권서를 취소불능의 것으로 하는 것은 상환은행에 있어서 마찬가지의 취소불능 채무를 창출하는 것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지만 상환은행이 자신의 償還確約을 발행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상환은

24) 黑瀬雄三, 주) 22, p.23.

행이 그와 같은 채무를 인수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상환수권서는 개설은행이 자신의 지시에 기초하여 상환은행이 지급을 하기 위한 단순한 지시에 지나지 않는다. 요컨대 지급을 실행하는 권한을 주기 위한 지시이다. 상환은행은 신용장을 보아도 보이지 않으며 따라서 신용장조건에 관심을 가지더라도 보이지 않는다. 개설은행에 의하여 개설된 신용장은 통상 취소불능이며 신용장의 수익자에 대한 약속을 表章하고 있다.²⁵⁾

상환수권서는 상환은행이 별도 상환계약을 발행하고 있지 않는 한 취소불능의 약속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본 규칙은 이 實務慣行을 반영하고 있다. 상환수권서가 취소불능이 아닌 것에는 많은 이유가 있다. 개설은행은 예를 들면 신용장의 조건변경에 기초하는 상환수권서의 변경 또는 취소를 바라는지도 모르며 또한 상환은행의 償還請求가 있었던 때에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도 개설은행은 청구를 커버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구좌에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모든 상환수권서가 취소불능이었다면 상환은행은 신용장의 確認을 행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설은행의 여신결정과 같은 유형의 확약을 실행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이 속에는 상환은행에 의한 여신범위의 부여도 포함될 것이다. 명확히 상환은행은 자신을 취소불능의 것으로 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상기와 같은 의무와 책임을 진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²⁶⁾

3. 意義 및 批判

(1) 意義

URR 525에 관해서는 日本과 美國側에서 많은 支持를 보내고 있다. 먼저 일본측 학자들의 지지 이유를 고찰하여 본다. URR 525는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償還銀行은 단순한 지급을 위탁받을 뿐의 입장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의 NACIB가 1981년에 제정한 自主規則을 母體로 하여 그 내용을 더욱 더 확대하고 詳細化한 것이며 상환은행의 책임이 명확화되고 경감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²⁷⁾

25) 黑瀬雄三, 주) 22, p.24.

26) 上掲論文, p.25.

27) 高安昭之助, “ICC銀行間補償統一規則の概要”, 金融法務事情 No.1452, 金融財政事情研究會, 1996. 6. 5, p.15.

즉, 본 규칙은 상환의 事務節次面에서 관계당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상환은행의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 규정이지만 상환은행이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행하는 지정은행에 대하여 행하는 것이 있는 '償還確約'이라고 하며 지금까지 화환신용장통일규칙이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래의 상세한 규정을 제정하고 있는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²⁸⁾ 또한 본 규칙에 의하여 銀行間償還에 관한 법적 안정성을 대폭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 은행간상환의 실무가 신속·확실하게 실행되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신용장의 수익자에 대한 지급이 순조롭게 행해지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 의미에서 이 규칙은 은행관계자 뿐만 아니라 商社 및 輸出入企業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된다.²⁹⁾

다른 한편 이번 ICC 작업부 의장을 맡았던 Taylor 씨는 다음과 같이 본 규칙의 장점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다. 우리는 상환이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는가에 관하여 상당한 오해가 있음을 각국의 수령된 코멘트로부터 인식하였다. 그것은 상환은행이 아무런 지급의무가 없음을 매우 분명하게 하는 조항들이다. 동 은행의 지급의무는 실제로 취소가능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취소불능 약속이라고 오해한 많은 은행들이 있었다.³⁰⁾ 그 문제를 명확히 한 것이 본 규칙의 중요한 특징이다. 그것은 실제로 몇 개의 조항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주로 제4조에 포함되어 있다. 즉, 상환은행은 청구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를 지고 있지 않다.

또한 有效期日, 請求의 認證에 관한 문제를 명백히 한 것이 또한 본 규칙의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매우 유용한 특정중의 일부는 본 규칙 자체에는 그리 많지 않으며 註釋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것들은 많은 문제들에 관한 밝은 빛을 제공하여 준다. 하나의 예는 借記 事前 通知이다. 상환은행은 실제로 이것은 개설은행에 의하여 주장된 것일 때에 청구의 지급을 지연하는 것에 대하여 수년동안 나쁜 평판을 받아 왔다. 상환은행은 그 청구를 지급할 수 있지만 개설은행은 상환은행이 그들의 계정의 借邊에 기재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3일의 事前 通知期間을 주어야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상환은행은 개설은행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들에 있어서 이것에 대하여 비난을 받아 왔다.³¹⁾

28) 高安昭之助, 前揭論文, p.9.

29) 黑瀬雄三, 주) 14, p.6.

30) D. Taylor, see note 16, p.3.

(2) 批判

비록 현재 논의중인 본 규칙은 처음으로 신용장하에서의 상환 거래시 은행들이 준수하여야 하는 運營上의 履行標準을 설립하였을지라도, 본 규칙은 신용장하의 상환에 있어서 은행측에게 너무 많은 자유를 제공하여 준다는批判이 있다.³²⁾ 그 결과로 인해 비용이 추가될 것이며, 상환은행에게 신용장하에서 상환을 추구할 때에 소비된 管理時間이 追加될 것이며 가장 중요하게 기업의 現金流出을 喪失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다. 또한 지나치게 본 규칙은 企業使用者들은 거의 排除하고 銀行業 그룹에 의하여 만들어졌다는 비판이다. 그로 인하여 國際貿易, 信用狀社會의 대표들은 제안된 규칙을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일 주요한 당사자들 즉, 수입업자와 수출업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않은 지나치게 銀行便宜 為主로 제정되었다는 비난을 하고 있다.³³⁾

또한 지나치게 규정이 복잡하다고 독일 측에서는 많은 비난을 하고 있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償還過程 또는 UCP 제19조에 입각하여 관련된 은행들간에 행해진 계약 관행에서 어떠한 중대한 문제도 결코 발생한 적이 없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포괄적인 신 규칙³⁴⁾의 수행이 사실상 상환과정에 있어서 이전에는 결코 발생하지 않았던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음을 염려하고 있다. 독일 은행들은 이것이 본 규칙내에 작성된 요구조건들은 잘못과 看過가 必然的일 만큼 지나치게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히 발생할 수 있다고 염려한다. 독일 대표들은 또한 본 규칙의 수행은 이미 비용이 드는 거래인 신용장 과정을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게 만들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다. 현재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상환과정을 자행의 외부 지급부서에 맡기는 경향이 있지만 신 규정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행이 계속되는 것은 어렵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추가적인 訓練받은 職員들이 雇傭되어야 할 것임은 필연적인 것으로 보인다. 증대된 일의 분량과 은행들에 대한 더 높은 비용을 고려하여 볼 때 그러한 시간과 비용이 예상된 이익에 의하여 정당화가 되는가의

31) D. Taylor, see note 16, p.4.

32) 즉, 쉽게 말해 受益者에게 지급함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지연을 허용한다.

33) R. B. Long III, "New Rules Regarding Reimbursement Under Commercial Letters of Credit-Good for Bankers, Not So Good for Everyone Else", *Business Credit*, Vol.97, Iss.3, March 1995, p.25.

34) 17개 조항으로 이루어지고 그 규칙 자체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註釋이 첨부되어 있다.

여부는 의심스럽다. 참으로 이것은 대단히 간단한 과정이었던 것을 과도하게 규정하는 시도이다.³⁵⁾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본 규칙은 1999년 12월 28일 현재 40개국만이 채택하고 있을 뿐이다. 信用狀統一規則이 1999년 말 현재 119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것에 비해 너무 적은 국가들만이 채택하고 있으며, 독일, 벨기에, 핀란드 및 아이슬란드를 비롯한 선진 제국들도 아직 본 규칙을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본 규칙의 國際化에는 아직도 험난한 길이 놓여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IV. 結論

여기에서는 본 규칙과 관련한 注意事項과 實務에서의 留意點을 指摘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먼저 본 규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현재 採擇國數는 1999년 12월 말 현재 40개국에 이른다. 그런데 채택국 리스트에서 말하는 國別이란 개개의 은행에 의한 개별채택과 은행협회 등에 의한 단체채택의 쌍방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을 뿐이며 개개의 은행명은 밝히지 않는다. 따라서 URR 525의 적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은행간의 償還授權書 및 신용장의 속에 각각 URR 525를 적용하는 취지의 문언이 명기되어 있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상기와 같은 적용문언이 없다면 비록 채택국 리스트에 언급되어 있는 나라의 경우더라도 URR 525의 적용을 강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역으로 URR 525의 비채택국의 경우더라도 개개의 은행이 발행하는 償還授權書, URR 525를 적용하는 취지의 문언이 있다면 관계당사자가 이 문언에 의하여 구속된다는 것이다.

또한 규정의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므로 그것을 은행업무의 시스템 내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 규칙은 전술한 바와 같이 그 모체가 되는 미국의 NACIB 규칙에 주로 기초하였지만 그 규칙에서는 취급하고 있지 않으며 URR 525가 처음으로 받아들인 償還確約과 관련해서 상환확인

35) B. Hoffman and D. Taylor, "The new ICC Uniform Rules for Bank-to-Bank Reimbursements came into effect on July 1. Bernd Hoffman and Dan Taylor debate their importance", *Documentary Credits Insight*, ICC, Vol.2, No.3, Summer 1996, p.7.

의 事務取扱面을 주된 대상으로 한 詳細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상환화약의 조건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 또한 신용장조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할 수 있는가 등 명확하지 않은 점도 많으므로 實務上 注意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参考文獻

- 高安昭之助, “ICC銀行間補償統一規則の概要”, 金融法務事情 No.1452, 金融財政事情研究會, 1996. 6. 5.
- 橋本喜一, “信用狀における償還請求の諸問題(下)”, 手形研究 No.494, 1994. 6.
_____, 譯, 荷爲替信用狀の法理概論, 九州大學出版會, 1994.
- 東京銀行システム部 東銀リサ-チインタ-ナショナル編, 貿易と信用狀, 實業之日本社, 1996.
- 黒瀬雄三, “銀行間補償に關する統一規則の意義と採擇に至る經緯”, 銀行法務 21 No.523, 1996. 8.
_____, “ICC銀行間補償統一規則の意義と採擇に至る經緯”, 金融法務事情 No. 1452, 金融財政事情研究會, 1996. 6. 5.
- Hoffman, B. and D. Taylor, “The new ICC Uniform Rules for Bankto-Bank Reimbursements came into effect on July 1. Bernd Hoffman and Dan Taylor debate their importance”, *Documentary Credits Insight*, ICC, Vol.2, No.3, Summer 1996.
- Long III, R.B., “New Rules Regarding Reimbursement Under Commercial Letters of Credit-Good for Bankers, Not So Good for Everyone Else”, *Business Credit*, Vol.97, Iss.3, March 1995.
- Miserez, P.V., “Paul V. Miserez reports on how S.W.I.F.T. is implementing the ICC's Bank-to-Bank Reimbursement Rules”, *Documentary Credits Insight*, ICC, Vol.3, No.1, Winter 1997.
- Taylor, D., “Dan Taylor on precautions to be taken with the reimbursement undertaking”, *Documentary Credits Insight*, ICC, Vol.3, No.3, Summer 1997.
_____, “Dan Taylor on the new ICC bank-to-bank reimbursement rules”, *Documentary Credits Insight*, ICC, Vol.1, No.3, Summer 1995.

ABSTRACT

A Study on the Legal Principles and ICC Uniform Rules for Reimburse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Transactions

Kim, Jong Tae · Park, Seok Jae

Until July 1, 1996, no international rules, other than the simple practices contained in the UCP 500 have existed for the processing of bank-to-bank reimbursements. At last, ICC Uniform Rules for Bank-to-Bank Reimburse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Pub. No. 525) have been published on July 1, 1996. Our country have adopted the URR 525 on August 1996. But in view of the present number of countries adopted the URR 525, I think our country is very impetuous.

In order to comprehend the URR 525 correctly, this study is carrying out to clarify the legal principles on reimbursements among issuing banks, nominated banks, unauthorized banks. Secondly, this study is carrying out indicate the background of establishing, the main contents, the approval and the criticism of URR 525. Finally, this study is carrying out to point out the matters that demand special attention about the operation of URR 525

Key Words : Letters of Credit, UCP, URR, Reimbursement